PYO & COMPANY

투자용 기술력평가 지표

(2020 산자부 기술평가실무가이드 발췌)

목차

1. 경영역량 평가지표 3
2. 기술역량 평가지표 8
3. 시장잠재력 평가지표 14
4. 사업역량 평가지표 16
부록. 기술지식수준 판단표 21

1. 경영역량 평가지표

경영역량의 평가대상은 경영주, 경영진, 기업이다. 평가지표는 소분류기준으로 기업가정신, 경영주 신뢰성, 기술경험수준, 경영주기술지식수준, 경영진기술지식수준, 기술경영수준, 경영관리능력, 투자관리능력의 8 개 지표를 평가한다. 경영역량의 평가지표는 <표 5-10>과 같다.

<표 5-10> 경영역량의 평가지표

<table>
<tr><th>구분</th><th>평가지표</th><th>평가
대상</th></tr>
<tr><td>기업가
정신</td><td>성취욕구, 결단력, 위험감수성 등 경영주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업가정신을 다음과 같은 검토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개별 검토항목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경우를 의미

[검토방법]
① 성취욕구: 명확한 목표가 수립되어 있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이다.
② 결단력: 의사결정 능력과 결단력이 있다.
③ 위험감수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행의지가 강하다.
④ 창의력: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사고하며 창의적이다.
⑤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며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보유하고 있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5 개 항목
충족</td><td>4 개 항목
충족</td><td>3 개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충족</td></tr>
</table>
</td><td>경영주</td></tr>
<tr><td>경영주
신뢰성</td><td>경영자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판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다음과 같은 검토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개별 검토항목의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

[검토방법]</td><td>경영주</td></tr>
</table>

<table>
<tr><td></td><td>① 대내적 신뢰: 최근 1 년 이내 임금을 체불한 사례 또는 납품처 등과의 거래조건을 불이행한 사례가 없다.
② 대외적 신뢰: 경영주의 대외활동 네트워크 구축, 평판 등이 양호하며,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③ 사회기여도: 사회봉사 관련 포상, 수익의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④ 인적투명성: 비상근 임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없다.
⑤ 자산투명성: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가지급금 포함)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가수금 포함)이 당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3% 미만이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5 개 항목 충족</td><td>4 개 항목 충족</td><td>3 개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충족</td></tr>
</table>
</td><td></td></tr>
<tr><td>기술경험 수준</td><td>경영자의 동업종 근무경력을 통해 평가한다. 다만 대상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사업분야에 종사했을 경우에 이를 동업종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융합기술의 개별기술(“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상 중분류기술) 중 어느하나의 개별기술 관련된 종사경험도 동업종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검토방법]
-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수준 업종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 동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이하의 업종과 동일한 경우 한해 인정한다.
-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경영주(실제 경영자)면담 등을 통해 확인
- 평가표에 입력된 “동업종입사년월”을 기준으로 평가
- 단서사항 인정 시 기술평가서에 근기를 반드시 기재
- 등급별 동일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점수산출식에 따라 계량점수 부여
*점수산출식: 5 점 X (“근무경력 개월 수”/“업종별 최고경력개월 수”)
근무경력 개월 수가 업종별 최고경력개월 수 이상자는 5 점 부여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근무경력 24 년 이상</td><td>근무경력 18 년 이상</td><td>근무경력 12 년 이상</td><td>근무경력 6 년 이상</td><td>근무경력 6 년 미만</td></tr>
</table>
</td><td>경영주</td></tr>
<tr><td>기술지식 수준</td><td></td><td>경영주</td></tr>
</table>

<table>
<tr><td></td><td>
경영주의 전공분야, 취득학위 및 자격증 등을 "기술지식수준 판단표[1]" 가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특급 기술자</td><td>고급 기술자</td><td>중급 기술자</td><td>초급 기술자</td><td>기 타</td></tr>
</table>
</td><td></td></tr>
<tr><td>기술경영 수준</td><td>
경영주를 제외한 경영진(관리, 기획, 재무, 기술(디자인), 마케팅 등 담당 핵심인력)의 동업종 근무경력을 경영주의 기술경험수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검토방법]
- 경영진의 기준은 실질적인 상근인력을 기준으로 한다.(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제외)
- 기업의 조직도, 이력서 등으로 파악한다.
- 경영진은 관리, 기획, 재무, 기술, 마케팅 분야 등 조직 내 총괄책임자급을 의미하며, 이사, 상무 등의 직함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근무경력 12 년 이상 경영진 3 명 이상</td><td>근무경력 12 년 이상 경영진 2 명 이상</td><td>근무경력 12 년 이상 경영진 1 명 이상</td><td>근무경력 8 년 이상 경영진 1 명 이상</td><td>기타</td></tr>
</table>
</td><td>경영진</td></tr>
<tr><td>기술지식 수준</td><td>
경영주를 제외한 경영진(관리, 기획, 재무, 기술(디자인), 마케팅 등 담당 핵심인력)의 전공, 경력(담당직무 경험,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검토방법]
- 경영진의 기준은 실질적인 상근인력을 기준으로 한다.(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제외)
- 기업의 조직도, 이력서 등으로 파악한다.
- 경영진은 관리, 기획, 재무, 기술, 마케팅 분야 등 조직 내 총괄책임자급을 의미하며, 이사, 상무 등의 직함 사용 여부와는 무관
- 전문지식수준은 "기술지식수준 판단표"를 준용한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able>
</td><td>경영진</td></tr>
</table>

[1] 기술지식수준 판단표는 부록 참조

<table>
<tr><td></td><td>
<table>
<tr><td>중급이상
경영진
3 명이상</td><td>중급이상
경영진
2 명이상</td><td>중급이상
경영진
1 명이상</td><td>초급이상
경영진
1 명이상</td><td>기타</td></tr>
</table>
</td><td></td></tr>
<tr><td>경영관리
능력</td><td>
경영주가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관리능력과 의지를 평가한다. 기술경영관점에서 기술의 확보 및 보유, 성과관리, 조직관리, 분쟁관리, 정보관리를 확인하고, 개별 검토항목의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검토항목]
① 기술확보: 제품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기술/제품 로드맵, outsourcing 전략, 신제품별 세부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단기 계획보다는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세부 R&BD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② 기술보유: 보유기술의 경쟁력, 비용구조, 이익창출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특허 보유 여부를 관리한다.
③ 기술성과: 기술창출에 대한 성과연동 보상제도를 규정화하고, 개발인력의 기술창출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④ 기술활용: 보유기술의 적용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환경 분석과 시장니즈 분석을 통해 미래 사업화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⑤ 기술조직: 기술조직이 경영계획 및 기술사업화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⑥ 기술분쟁: 기술 분쟁 및 피소를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⑦ 기술정보: 기술동향 및 시장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술개발에 반영한다.
<table>
<tr><td>A 등급</td><td>B 등급</td><td>C 등급</td><td>D 등급</td><td>E 등급</td></tr>
<tr><td>6 개 항목
이상 충족</td><td>5 개 항목
충족</td><td>4 개 항목
충족</td><td>3 개 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이하 충족</td></tr>
</table>
</td><td>기업</td></tr>
<tr><td>투자관리
능력</td><td>
경영주가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투자관리 관점에서 자금의 조달 및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 검토항목의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검토항목]
</td><td>기업</td></tr>
</table>

① 자본적 지출규모 산정: 향후 3 년 동안의 기업의 자본적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

② 운전자본 규모 산정: 향후 3 년 동안의 기업 운전자본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

③ 경상비용 규모 산정: 향후 3 년 동안의 매출액 증가, 기술인력 등 인력 증가 등을 토대로 경상비용 소요액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다.

④ 내부창출 자금 규모 산정: 향후 3 년 동안의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창출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다.

⑤ 외부조달 자금 규모 산정: 향후 3 년 동안의 외부투자유치, 외부차입(신용, 담보, 보증부 등) 등을 토대로 창출할 수 있는 자금조달 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다.

⑥ 자금상환 계획: 외부 차입금의 만기도래,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액 등의 (조기) 상환 요구 등에 대비한 자금관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

⑦ 투자규모의 적정성: 기업의 기 자본적 지출(설비투자 등) 규모가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 기술개발실적, 기 매출액 및 매출전망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6 개 항목 이상 충족	5 개 항목 충족	4 개 항목 충족	3 개 항목 충족	2 개 항목 이하 충족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02), '2020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2. 기술역량 평가지표

기술역량의 평가대상은 기업, 기술, 기술(지식재산)이다. 평가지표는 소분류기준으로 기술개발 인력,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완성도, 모방난이도, 권리안정성, 권리행사제한가능성, 지식재산활용도의 9 개 지표를 평가한다. 기술역량의 평가지표는 <표 5-11>과 같다.

<표 5-11> 기술역량의 평가지표

<table>
<tr><th>구분</th><th>평가지표</th><th>평가
대상</th></tr>
<tr><td>기술개발
인력</td><td>평가기준일 현재 기술개발 인력(기술지식수준 판단표 준용)을 파악하여 특급기술자 5 점, 고급기술자 4 점, 중급기술자 3 점, 초급기술자 2 점, 기타 기술자 1 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검토방법]
-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 기술인력이란 연구개발인력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인력(공정기술, 품질관리 등)도 포함한다.
- 기술인력은 실질적 상주기술인력으로 검토하며, 외주개발의 기술인력은 사내인력만을 인정한다.
- 등급별 동일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점수산출식에 따라 계량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개발 계약서, 기술인력 참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평가근기로 작성한다.

<table>
<tr><th>구분</th><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일반기업</td><td>25 점이상</td><td>19 점이상</td><td>12 점이상</td><td>6 점이상</td><td>6 점미만</td></tr>
<tr><td>창업기업</td><td>18 점이상</td><td>13 점이상</td><td>9 점이상</td><td>5 점이상</td><td>5 점미만</td></tr>
</table>
</td><td>기업</td></tr>
<tr><td>기술개발
투자실적</td><td>기술개발실적과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에 대한 점수를 표에 따라 평가한 후, 연구개발투자비율에 따라 한 등급 상하향 조정한다.

[검토방법 1]
- 5 점 부여 인증 및 수상: IR52 장영실상, 10 대신기술상, NET, NEP, 교통신기술, 녹색기술 인증</td><td>기업</td></tr>
</table>

- 기술개발실적은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다른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경우를 의미
- 기술상용화실적은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술상용화에 포함된 실적은 기술개발 실적으로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개발, 정부의 R&D 개발("성공판정시")은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나, 외주개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한 경우 특허만 인정한다.
- 국내 특허출원이 아닌 PCT 출원인 경우 출원중인 특허로 인증한다.
- 정식계약(지식재산권 매입, 전용실시권 획득 등)에 의해 취득한 것도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한다.
- 바이오 업종의 등의 경우 품종보호권(품종보호권 등록증 확인분에 한함)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일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가 여러건인 경우 1 건으로 계산한다.
- 유사한 프로그램을 복수 또는 다수 등록한 경우에는 1 건으로 인정한다(예시. 동일프로그램의 버전 업은 1 건으로 인정).
- 개별평가항목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각 값을 합산한 후 등급을 평가한다.

기술개발 및 수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기술상용화 실적	건당 8 점	특허등록	건당 7 점	실용신안 등록	건당 3 점
기술개발실적	건당 4 점	특허출원	건당 2 점	실용신안 출원	건당 1 점
5 점 인정 수상실적	건당 5 점	등록 디자인	건당 2 점	프로그램	건당 2 점
기타 수상실적	건당 2 점	등록 상표권	건당 1 점	품종 보호권	건당 7 점
인증실적	건당 1 점	기타 지식 재산권	건당 1 점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일반기업	70 점이상	55 점이상	40 점이상	20 점이상	20 점미만
창업기업	40 점이상	30 점이상	20 점이상	10 점이상	10 점미만

[검토방법 2]

<table>
<tr><td></td><td>- 검토방법 1 에 따라 부여된 등급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비율(최근 3 년 평균)이 업종 평균의 2 배 이상이면, 한 등급 상향, 업종평균의 1/2 미만이면 한 등급 하향한다.
- 업종평균은 기업이 속한 업종의 한국은행 평균, NTB 평균, 기술평가기관 자체통계가 있는 경우 자체 통계상의 최근 3 년 평균을 적용한다.</td><td></td></tr>
<tr><td>기술의 차별성 (사업화 이후 기업 및 일반 기업에 적용)</td><td>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차별성 및 신기술 분야 개척 가능성 등을 통해 평가한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매우 높아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가능함</td><td>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매우 높아 응용분야에서 유용성이 보통임</td><td>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높으나, 응용분야에서의 유용성이 보통임</td><td>기존 기술과 유사하고, 응용분야에서의 유용성이 낮음</td><td>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낮거나 없음</td></tr></table></td><td>기술</td></tr>
<tr><td>기술의 혁신성 (사업화 이전 기업에만 적용)</td><td>사업계획 중인 기술의 완성도, 차별성 및 신기술 분야 개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검토항목]
① 완성도: 대상기술이 구체적이고 완성도가 높다.
②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③ 확장성: 타제품 또는 타산업으로 확장성이 있다.
④ 차별성: 기존 기술(BM, 디자인) 대비 차별성이 있다.
⑤ 고객지향: 고객 또는 시장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술이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4 개 항목 이상</td><td>3 개항목</td><td>2 항목</td><td>1 개항목</td><td>해당없음</td></tr></table></td><td>기술</td></tr>
<tr><td>기술의 완성도</td><td>대상기술의 기술개발 진척도를 통해 평가한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제품화 또는 상업화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의 단계를 평가한다.

[검토방법]
- 시제품 제작: 사업아이디어가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된 단계
- 제품화 완료: 양산화 전단계로 시제품이 좀 더 구체화 되어 양산형태가 완성된 단계</td><td>기술</td></tr>
</table>

<table>
<tr><td></td><td>- 양산준비단계: 완성된 양산 시제품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생산설비 확보, 양산을 위한 기술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잠재적 매출처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중인 단계(계약서, 인수의향서(LOI) 또는 양해각서(MOU) 등을 감안)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양산
준비단계
이상</td><td>제품화 완료
단계</td><td>시제품제작
완료 단계</td><td>연구·개발
단계</td><td>아이디어
단계</td></tr></table></td><td></td></tr>
<tr><td>모방
난이도</td><td>대상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지식재산권 등록, 사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모방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개별 검토항목마다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검토항목]
① 기술개발시 개발비가 많이 요구된다.[2]
② 기술개발시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③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으로 등록(출원 제외) 되어있다.
④ 리버스엔지니어링[3]으로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⑤ 모방되더라도 사업이익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5 개 항목
충족</td><td>4 개 항목
충족</td><td>3 개 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충족</td></tr></table></td><td>기술</td></tr>
<tr><td>권리
안정성</td><td>등록된 권리들이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무효심판 제기가능성, 선행기술조사결과 등을 고려)을 평가한다. 유사특허 권리가 다수 존재할 경우 이들 권리 간의 차별적 속성을 비교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출원 중인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 점을 부여할 수 있다.</td><td>기술
(지식
재산)</td></tr>
</table>

[2] 기술개발시 소요되는 개발비 및 기간은 기술분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예,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소요되는 개발비가 적음)

[3]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역으로 추적하여 처음의 설계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용이할수록 모방이 쉽다.

<table>
<tr><td></td><td>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유사한 선행특허 기술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권리의 무효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td><td>유사한 선행특허 기술이 소수 존재하나, 권리의 무효화 가능성 낮음</td><td>유사한 선행특허 기술이 존재하며,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함</td><td>유사한 선행특허 기술이 다수 존재하며, 핵심 권리의 안정적 유지가 불확실함</td><td>동일한 선행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td></tr>
</table>
</td><td></td></tr>
<tr><td>권리행사 제한 가능성</td><td>
권리범위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절히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청구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범위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타인에 의한 회피기술 출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평가하고, 개별 검토항목마다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검토항목]
①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역에 특허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
② 청구항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범위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어 권리범위가 넓다.
③ 타인의 회피설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침해발견과 입증이 용이하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4 개 항목 충족</td><td>3 개 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충족</td><td>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td><td>기술 (지식 재산)</td></tr>
<tr><td>지식재산 활용도</td><td>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실제로 제품제조에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분류한 후, 구성요소별로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지식재산이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에 충분히 적용됨</td><td>지식재산이 제품의 주요요소에 충분히 적용됨</td><td>지식재산이 제품의 주요 핵심요소에 적용되지만 추가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td><td>지식재산이 제품의 핵심요소에 적용되지 않음</td><td>지식재산이 제품에 거의 적용되지 않음</td></tr>
</table>
</td><td>기술 (지식 재산)</td></tr>
</tabl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02), '2020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3. 시장잠재력 평가지표

시장잠재력의 평가대상은 시장과 제품/서비스이다. 평가지표는 소분류기준으로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시장경쟁구조, 경쟁제품과의 비교 우위성의 4 개 지표를 평가한다. 시장잠재력의 평가지표는 <표 5-12>와 같다.

<표 5-12> 시장잠재력의 평가지표

<table>
<tr><th>구분</th><th>평가지표</th><th>평가
대상</th></tr>
<tr><td>시장
규모</td><td>국내외에서의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근거로 시장규모를 평가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역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검토방법]
- 시장은 대상기술 제품(서비스)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서비스)의 시장규모로 정의한다
-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 잠재수요(향후 3 년 평균)를 감안한 시장규모를 고려한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대상제품의 시장규모가 매우 큼</td><td>대상제품의 시장규모가 큼</td><td>대상제품의 시장규모가 보통임</td><td>대상제품의 시장규모가 작음</td><td>대상제품의 시장규모가 매우 작음</td></tr></table></td><td>시장</td></tr>
<tr><td>시장
성장성</td><td>대상기술 제품(서비스)이 속한 업종에 대한 산업시장분석 보고서, 전문가 의견, 전문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시장 성장성을 평가한다.

[검토방법]
- 평가 기준일 이후 3~5 년 동안의 시장성장성에 대해 협회, 국내외 민간 시장조사기관 및 국책연구소 등의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향후 높은 수준의 성장성을 보일</td><td>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지속될</td><td>향후 평균 경제성장률 수준으로</td><td>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음 (불확실)</td><td>시장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향후</td></tr></table></td><td>시장</td></tr>
</table>

<table>
<tr><td></td><td>것으로 전망됨
(매우 우수)</td><td>것으로 전망됨
(양호)</td><td>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보통)</td><td></td><td>성장 가능성도
매우 낮음
(마이너스 성장
확실)</td><td></td></tr>
<tr><td>시장
경쟁구
조</td><td colspan="5">시장구조, 비용구조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검토항목마다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검토항목]
① 집중도: 대상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경쟁자가 적절하게 시장을 분할하고 있고, 시장참여가 가능하다.
② 차별화: 목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여 업체간의 과다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③ 비용구조: 고정비의 비중이 적어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초기시장: 시장형성 초기 단계로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기업이나 대표제품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⑤ 규제 및 지원: 규제 및 지원요인 등에 의해 시장의 경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4 개 이상
항목 충족</td><td>3 개 이상
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충족</td><td>해당사항
없음</td></tr></table></td><td>시장</td></tr>
<tr><td>경쟁
제품과
의 비교
우위성</td><td colspan="5">경쟁제품의 존재여부와 경쟁제품에 대한 차별화 및 원가우위 등 비교우위성을 평가한다.

[검토항목]
① 경쟁제품이 소수이다.
② 경쟁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다.(x2 점)
③ 경쟁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경쟁력이 있다.(x2 점)
④ 구매자의 자사 제품으로의 교체의사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⑤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 비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6 점 이상</td><td>5 점</td><td>4 점</td><td>3 점</td><td>2 점 이하</td></tr></table></td><td>제품/
서비
스</td></tr>
</tabl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02), '2020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4. 사업역량 평가지표

사업역량의 평가대상은 기업이다. 평가지표는 소분류기준으로 생산능력(생산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판매처 확보여부), 매출전망, 이익전망, 투자회수 전망을 평가하고 사업화이전(창업기업1)과 사업화이후(창업기업2,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중복지표 2개를 제외하면 5개 지표를 평가한다.[4] 사업역량의 평가지표는 <표 5-13>과 같다.

<표 5-13> 사업역량의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대상
생산능력 (사업화 이후 기업 및 일반 기업에 적용)	생산시설이나 투입인력 그리고 재료와 부품조달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개별 검토항목마다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자체생산인 경우> [검토방법] ① 생산시설 규모: 현재 생산시설로 예상수요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② 생산시설 수준: 현재 생산시설 수준이 양호하여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③ 생산인력 수급: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인력수급이 양호하다. ④ 생산인력 수준: 생산인력의 교육수준과 경험수준이 높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⑤ 원재료/부품의 수급: 원재료나 부품 수급이 용이하다. ⑥ 원재료/부품의 수급 경쟁력: 경쟁업체에 비하여 우월한 입장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 <외주인 경우> 생산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외부업체와 대상기업과의 관계, 외부업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 외주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검토항목]	기업

[4] 사업역량의 평가지표는 사업화이전/사업화이후의 중복지표 2 개 제외함

<table>
<tr><td></td><td>① 외주업체와의 관계: 장기공급계약, 투자관계 등 장기적인 동반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② 외주업체의 경쟁력: 외주업체의 역량(품질, 가격, 인지도 등)이 해당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외주업체의 규모: 외주업체가 상장기업이거나 등록기업 혹은 외부 감사대상 기업이다.
<table>
<tr><th>구분</th><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자체생산</td><td>5 개 이상 항목 충족</td><td>4 개 항목 충족</td><td>3 개 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이하</td></tr>
<tr><td>외주생산</td><td>비부여 등급</td><td>3 개 항목 충족</td><td>2 개 항목 충족</td><td>1 개 항목 충족</td><td>해당 항목 없음</td></tr>
</table></td><td></td></tr>
<tr><td>생산계획의 타당성 (사업화 이전 기업에만 적용)</td><td>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 기존제품(원가절감 등)이 아닌 신규기술에 대한 생산계획일 경우 적용한다.
• 외주생산의 경우 “납기에 맞추어 생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등을 감안한여 평가한다(단, 계약서 내용 확인필).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td><td>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양호함</td><td>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보통임</td><td>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음</td><td>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음</td></tr>
</table></td><td>기업</td></tr>
<tr><td>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사업화 이후 기업 및 일반 기업에 적용)</td><td>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능성, 판로구축계획 수립여부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한다.
<table>
<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
<tr><td>판매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td><td>판매처가 다양하나 기확보한 판매처가 일부 제한적이고, 유동적이어서</td><td>신규 판매처를 확보 중이며, 판매처 구축에 관한 실현가능한 계획이</td><td>신규 판매처를 확보 중이나 판매처 구축에 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td><td>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판로구축에 관한 구체적인</td></tr>
</table></td><td>기업</td></tr>
</table>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추가적인 판매처를 확보 중임	수립되어 있고, 계획이 일부 진행 중임		계획 수립이 미흡함	
판매처 확보여부 (사업화 이전 기업에만 적용)	사업(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방향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개별 항목마다 '충족'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검토항목] ① 경쟁업체(유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② 목표시장(고객)설정이 명확하고, 마케팅 전략이 목표시장과 일치한다. ③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다. ④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구매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4 개 항목 충족	3 개 항목 충족	2 개 항목 충족	1 개 항목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매출 전망	대상기술 제품(서비스)의 매출액 성장성에 대한 과거 자료 분석 및 미래전망을 통해 향후 어느정도 외형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를 평가한다. [검토방법]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X 100 - 과거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거 매출액 증가율을 참조하여 향후 매출성장성을 평가한다. - 과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산업 및 시장의 성장성, 유사사업의 성장성,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을 통한 대상제품의 차별성 등을 파악하여, 미래의 매출성장성을 평가한다. 단, 창업 7 년 이내 기업의 경우 사업화 실적(매출)이 있더라도, B 등급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 기업의 과거 매출액 성장률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를 통하여 산출함. ※ 산업평균 매출액성장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TB 재무자료, 기술평가기관 자체 통계가 있는 경우 자체 평균 등을 활용함. ※ 업종 최근 자료(3 개년 매출액으로 산정한 2 개년 평균)를 업종 평균으로 함.					기업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table>
<tr><td></td><td>매출액 증가율 전망치가 해당산업 평균보다 3 배 이상 큼</td><td>매출액 증가율 전망치가 해당산업 평균보다 2 배 이상 큼</td><td>매출액 증가율 전망치가 해당산업 평균 대비 1 배 이상임</td><td>매출액 증가율 전망치가 해당산업 평균보다 낮으나, 향후 3 년 이내에 개선 가능성이 있음</td><td>매출액 증가율 전망치가 해당산업 평균보다 낮고, 향후 3 년 이내에 개선 가능성이 없음</td><td></td></tr>
<tr><td>이익 전망</td><td colspan="5">영업활동의 최종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영업이익률 분석을 통해 향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평가한다.

[검토방법]
※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 X100
※ 과거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거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향후 이익전망을 평가한다.
※ 과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산업 및 시장의 경쟁상황,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의 매출영업이익률을 평가한다. 단, 창업 7 년 이내 기업의 경우 사업화 실적(매출 및 영업이익)이 있더라도, B 등급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 과거 영업이익률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를 통하여 산출함.
※ 산업평균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TB 재무자료, 기술평가기관 자체 통계가 있는 경우 자체 평균 등을 활용함
※ 최근 자료(최근 3 개년 영업이익률 평균)를 업종 평균으로 사용함.

<table><tr><th>A 등급</th><th>B 등급</th><th>C 등급</th><th>D 등급</th><th>E 등급</th></tr><tr><td>영업이익률이 해당 산업 평균보다 1.5 배 이상 높음</td><td>영업이익률이 해당산업 평균보다 1.2 배 이상 높음</td><td>영업이익률이 해당산업 평균보다 0.8 배 이상임</td><td>영업이익률이 해당산업 평균의 0.8 배 이하이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td><td>영업이익 측면에서 볼 때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없음</td></tr></table></td><td>기업</td></tr>
<tr><td>투자회수 전망</td><td colspan="5">기업의 IPO(특례상장 등 포함), M&A, 지분매각 등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평가한다.

[검토방법]
- 기업의 상장계획을 문서(계약서, 의향성 등), 증권회사 IPO 관련 부서 면담 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td><td>기업</td></tr>
</table>

- 기업의 보유기술, 수익모델, 업종 등이 특례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특례상장 관련 기준, 평가모형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
- 대상기업이 일반상장을 계획 중인 경우, 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최근 유사업종 일반상장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수준과 비교하여 IPO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은 투자목적상 적정한 회수 방안이 아니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4 년 이내 회수 가능성 높음	5 년 이내 회수 가능성 높음	6 년 이내 회수 가능성 높음	7 년 이내 회수 가능성 유동적임	7 년 이내 회수 가능성 거의 없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02), '2020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부록. 기술지식수준 판단표

1) 기술개발 인력

구분	판단기준	
특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 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10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3 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9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12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8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 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7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 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 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6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9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5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 년 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4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3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6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2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1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3 년 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3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9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해당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중분류 이하 (영문포함 네 자리 수)의 기술분류와 같은 경우의 기술분야를 일컬음. • 다만, 분류체계상 상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기술분류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해당기술 분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표의 평가근거란에 관련근거를 입력해야 함. • (예) EB02 세라믹재료(재료)와 ED04 반도체소자/시스템(전기/전자); LC15 독성/안전성 관리기반(보건의료)와 EH09 환경보건(환경); 등	

2) 전문디자인 산업용

구분	판단기준(전문디자인산업용)	
특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8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1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1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7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6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1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4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7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3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2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1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4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0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2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5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1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7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관련분야의 기술 및 산업기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사자격만을 인정하며 제품디자인 기술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등이 있음 • 관련분야는 미술, 디자인, 예술기획 및 예술경영 관련 분야만 인정	

3)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구분	경영진 및 서비스기술인력 부문 판단기준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마케팅인력 부문 판단기준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특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8 년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1 년이상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7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마케팅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마케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7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4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4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 년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5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7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2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마케팅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미만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마케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5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7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2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2 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 년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2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5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0 년이상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마케팅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 년 미만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마케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5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7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12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2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 년 미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2 년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4 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마케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2 년 미만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4 년이상 마케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